

**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
주요 내용 안내**

-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안내용 -

2022. 9.

The Best Guarantee



건설공제조합
Construction Guarantee

1.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이란 무엇인가요? 조합원에게 무엇이 좋은가요?

- 조합원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함으로써 조합원에게는 유동성을 지원하고,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보증서를 통해 채권을 보호받습니다.

조합원이 사무실을 임차할 때,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의 “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계약보증서나 하자보수보증서도 예전에는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예치하던 것을 조합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었고, 신용사회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

이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도 저렴한 요율로 보증서로 대체함으로써 조합원인 임차인의 부담은 완화되고,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임대차보증금을 조합원이 활용할 수 있어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.

□ 상품 개요

구 분	내 용
상품명	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
보증대상	건설업 영위과정에서 필수적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납부의무
보증금액	임대차계약 상 <u>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</u>
보증채권자	조합원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
보증기간	발급일 ~ 임대차계약 종료일 (원상복구 완료확인 시 해제) * 계약문서로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음
보증책임	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의 손실금액 지급 * 제비용(차임, 공과금 등) 및 임차인 채무(원상복구 등)
기본요율	연 0.80% * 신용등급별 가감율 적용($\pm 30\%$), 보증금 일부 대체 시 할인(20~50%)
제출 서류	임대차계약서, 국세납세증명서(BBB등급 이상 생략가능), 무사고증명원(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, 발급일 이전 보증기간 소급 시, 기존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 시)

2.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조합의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?

- 임대인과 임차인(조합원) 간에 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겠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.

임대인이 공실률을 해소하고, 임차인을 유치 또는 유지하기 위해 **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차조건(렌트프리,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)**을 제공하는 것처럼,

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이 가지는 **담보적 기능**은 조합 보증서로 대신하고, **임차인의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은 완화하여 공실률을 해소하고 임대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.**

이런 상호 이익에 따라, **임대차보증금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 보증서로 임대차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**

-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.

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은 마치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던 때와 같습니다.

오랜 사회적 관행을 깨고 상생하는 신용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**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.**

※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 일부 인상 등을 협상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음

조합원이 임대차보증금을 대체하기 위해 임대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, 조합은 적극적으로 상품을 홍보하여 조합원을 지원하겠습니다.

3. 기존 임대차계약도 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?

- 신규계약과 마찬가지로 변경계약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한다는 합의와 보증발급일 현재 보증사고가 없다는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아래 임대차변경계약서(예시)를 참고하여 임대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의 **변경계약**을 체결하실 경우, **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**

예시] 사무실 임대차 변경 계약서[안]

임대인(“갑”이라 한다)과 임차인(“을”이라 한다)이 2022년 0월 0일 체결한 사무실 임대차계약(“본계약”이라 한다)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다 음

제1조 【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】

- ① 본계약 제OO조에 따라 을이 갑에게 납부한 임대차보증금 _____원 중 _____원을 건설공제조합의 “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서”로 대체하기로 한다.

② 갑은 을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임대차보증금 ()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.

(필요시 상호 합의에 따라 ③ 추가 가능)

③ 제1항에 따라 보증금(현금)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대가로 을은 갑에게 일시금으로 금 00,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보증금(현금)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대가로 을은 갑에게 매월 임차료 0000원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한다.

2022년 월 일

갑 임대인 (인)
을 임차인 (인)

4. 임대차보증금을 일부만 대체할 수 있나요? 무엇이 좋은가요?

-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을 설득하는데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조합의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아직 상품 출시 초기 단계로 임대인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우선 일부 보증금은 그대로 현금으로 예치하고, 일부는 보증서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.

- 일부 보증금만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, 조합은 보증수수료의 20~50%를 할인해 드립니다.

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, 보증금 대체비율에 따라 20%에서 최대 50%까지 보증수수료를 할인합니다.

임대차보증금(현금)의 보증서 대체비율	수수료 할인율
- 10% 이상 20%미만	20%
- 20% 이상 30%미만	30%
- 30% 이상 50%미만	40%
- 50% 이상	50%

다만, 보증사고(차임 연체 등) 발생 시 현금 임대보증금에서 먼저 충당된 후 보상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조합이 보증서 상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.

5. 보증서로 대체 후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는 경우에는 조합에 연장(갱신)보증을 신청하고, 연장(갱신)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임대차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연장(갱신)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, 조합은 기존 보증서의 보증기간 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.

이에 따라,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거나, 임대보증금을 다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6. 임대차계약기간(보증기간) 종료 후 발생하는 원상복구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나요?

- 조합은 조합원이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약관에 따라 대신 이행합니다.

따라서,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원상복구 불이행 등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책임을 이행(현금 보상 또는 원상복구의 경우 역무이행도 가능)합니다.

다만, 보증기간 개시 전 이미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7. 회사 사정으로 임차료 등이 연체되었습니다. 어떻게 되나요?

- 조합원이 임차료 등을 연체할 경우, 임대인은 조합에게 유선, 우편, 인터넷(모바일)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.

연체사실이 조합에 통지되는 경우, 조합은 조합원에게 연체사실 해소를 요청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이 청구되는 경우, 업무거래 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속히 연체를 해소하셔야 합니다.

※ 인터넷 홈페이지 <발급사실조회 - 임대차연체사실 통지>



기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거나,
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